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거창군결산검사위원회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거창군수 귀하

2017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로부터 거창군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 18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거창군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
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거창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거창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강 철 우
검사위원	백 한 중
검사위원	송 재 명
검사위원	임 중 호

목 차

I. 결산검사 경과 -----	3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4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	4
2. 세입·세출 결산 -----	7
3. 재무제표의 결산 -----	19
4. 성과보고서 -----	23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6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30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	30
2. 성과보고서 분야 -----	37
3.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분야 -----	40
4. 수범사례 -----	41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42
V. 금고의 결산 -----	48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7. 3. 30. — 2017. 4. 18.(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강 철 우	재무제표 결산 및 검사 총괄	
위 원	백 한 중	세입세출 및 금고결산	
위 원	송 재 명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및 개선 권고사항	
위 원	임 종 호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군 본청	3.30~4.11	재정상황 파악 및 결산내용 적정여부 검토	
군 의회	4.12~4.13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직속기관	4.14~4.16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사 업 소	4. 17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4. 18	결산검사 총괄정리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회계	세입	511,862,263	554,648,770	498,526,361	514,855,237	523,685,518
	세출	343,564,105	445,698,576	367,822,087	383,476,529	369,344,239
	결산상잉여금	168,298,158	108,950,194	130,704,274	131,378,708	154,341,279
특별회계	세입	58,950,499	84,460,549	64,293,672	67,563,402	66,373,684
	세출	35,363,324	50,201,268	34,668,943	35,733,977	31,027,202
	결산상 잉여금	23,587,175	34,259,281	29,264,729	31,829,425	35,346,481
기금	수입	11,515,989	12,261,992	13,749,971	14,027,841	14,188,402
	지출	1,032,404	1,152,616	909,612	792,113	802,697
	결산상 잉여금	10,483,585	11,109,376	12,840,359	13,235,728	13,385,705
총 계	세입(수입)	582,328,751	651,371,311	576,570,004	596,446,480	604,247,604
	세출(지출)	379,959,833	497,052,460	403,400,642	420,002,619	401,174,138
	결산상 잉여금	202,368,918	154,318,851	173,169,362	176,443,861	203,073,465

○ 2016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며,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203,073,465천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1,985,454,374	40,329,093	1,945,125,281	410,472,829	323,968,427	(86,504,402)	
2015년	1,907,059,090	36,660,793	1,870,398,297	408,459,169	329,843,677	(78,615,492)	
증 감	78,395,284	3,668,300	74,726,984	2,002,543	(5,875,250)	(7,888,910)	

○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74,726,984천원으로 재정 상태는 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7,888,910천원(10%) 증가하여 총 자산은 1,985,454,374천원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하였다.

거창군 자치단체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5,177,000	756,000	0	0	0	
공채 b			0	0	0	
차입금 c	5,177,000	756,000	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10,866,400		0	0	0	
채무총합계 f(a+e)	16,043,400	756,000	0	0	0	

○ 2013년도에는 756,000천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100% 상환함으로써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2011.10.12.)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를 주의 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재정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frac{(\text{세입} - \text{지출및순용자})}{\text{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 채}}{\text{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재정자립도 : 7.6%

○ 재정자주도 : 58.3%

거창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하겠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 A-B)
합 계	577,119,844	590,059,202	400,371,441	189,687,761 (1,090,910)
일반회계	511,522,341	523,685,518	369,344,239	154,341,279 (891,742)
특별회계	65,597,503	66,373,684	31,027,202	35,346,482 (199,168)
공기업특별회계	32,061,195	33,518,439	19,011,835	14,506,604
상수도사업	11,928,565	13,308,182	5,831,377	7,476,805
하수도사업	20,133,130	20,210,257	13,180,458	7,029,799
기타특별회계	33,535,808	32,855,245	12,015,367	20,839,878
의료보호기금	779,528	779,204	778,278	9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07,000	509,856	144,332	365,524 (199,168)
주차장관리	610,240	625,791	227,216	398,575
산업단지조성사업	7,012,330	6,340,094	1,863,071	4,477,023
수질개선	5,207,077	5,180,813	5,096,343	84,470
담주변지역지원사업	705,946	707,514	695,487	12,027
기반시설	55,770	55,770	55,770	-
농업발전기금	18,657,917	18,656,203	3,154,870	15,501,333

(단위 : 천원)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38,022,177 (199,168)	28,969,284 (114,964)	8,768,289 (776,778)	4,891,696	109,036,315
일반회계		36,336,384	24,640,279 (114,964)	8,756,409 (776,778)	4,878,371	79,729,836
특별회계		1,685,793	4,329,005	11,880	13,325	29,306,479
공기업특별회계		1,511,834	3,373,046			9,621,723
상수도사업		520,000	1,384,138			5,572,667
하수도사업		991,834	1,988,908			4,049,056
기타특별회계		173,959 (199,168)	955,958	11,880	13,325	19,684,756
의료보호기금						9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63,500 (199,168)			6,000	196,024
주차장관리						398,575
산업단지조성사업			936,800	11,880		3,528,343
수질개선					7,325	77,145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459				1,568
기반시설						
농업발전기금			19,158			15,482,175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0,059,202천원으로 전년대비 7,640,563천원(1.3%)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32.0%)이고, 총 590,059,202천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2%, 60.3%이다.

○ 세출은 세입결산액의 67.8%인 400,371,441천원으로 전년대비 18,839,065천원(4.5%) 감소하였으며, 총 577,119,844천원의 예산현액 중 400,371,441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67.8%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11,522,341	527,141,570	523,685,518	280,741	3,175,311
결산확인액	511,522,341	527,141,570	523,685,518	280,741	3,175,311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523,685,518천원은 예산액의 102.4%로서 12,163,177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수입의 증가 및 국세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입의 증가, 신규 대규모 아파트의 재산세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280,741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거소 불명 24,640천원, 무재산 192,682천원, 배분금액부족 1,379천원, 기타 31천원으로 발생되었는바, 그 가운데 시효소멸로 62,009천원이 불납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었으며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이월체납액 증가

- ▶최근 2년간 이월체납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4,025,417천원으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되었고, 그 중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경우 2,145,448천원으로 20.3%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월체납액의 증가사유는 징수 전담조직 부재와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적극적인 징수의지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다.
- 불납결손처분은 280,741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검사결과 적정하게 검토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23,685,518	523,685,518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대비 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16	511,522,341	527,141,570	523,685,518	280,741	103.1%	99.3%	0.05%
2015	514,053,898	517,927,967	514,855,237	371,309	100.8%	99.4%	0.07%
증감	△2,531,557	9,213,603	8,830,281	△90,568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최근 신규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와 국세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514,855,237천원 보다 8,830,281천원이 많은 523,685,518천원이 수납되었다.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71,309천원 보다 90,568천원이 감소한 280,741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거소불명 24,640천원, 무재산 192,682천원, 시효소멸 62,009천원, 배분금액부족 1,379천원, 기타 31천원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511,522,341	527,141,570	523,685,518	280,741	3,175,311	
지방세	소 계	19,898,290	25,272,973	24,112,359	130,750	1,029,863
	주민세	690,281	963,920	928,499	1,246	34,175
	재산세	4,026,947	4,695,707	4,583,529	939	111,239
	자동차세	8,180,482	9,366,883	8,899,820	11,707	455,356
	담배소비세	3,500,322	4,298,078	4,298,078		0
	지방소득세	3,120,245	5,068,904	4,921,246	37,947	109,711
	지난년도수입	380,013	879,481	481,187	78,912	319,382
세외수입	소 계	12,357,558	18,428,690	16,133,252	149,990	2,145,448
	재산임대수입	153,662	231,838	230,224	120	1,494
	사용료 수입	704,231	779,350	775,793		3,557
	수수료 수입	1,541,389	1,476,447	1,475,878		569
	사업수입	1,391,939	1,197,065	1,196,948		117
	징수교부금수입	405,005	825,563	825,563		0
	이자수입	2,187,000	2,411,758	2,411,532		226
	재산매각수입	352,000	341,974	341,974		0
	부담금	10,000	200,278	198,520		1,758
	과징금및과태료	261,910	496,884	311,112	4,310	181,462
	기타수입	5,200,422	8,530,104	8,192,489		337,615
	지난연도 수입	150,000	1,937,429	173,219	145,560	1,618,650
지방교부세	187,055,000	188,704,661	188,704,661		0	
조정교부금 등	16,964,850	18,798,054	18,798,054		0	
보조금	138,283,224	142,646,317	142,646,317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963,419	133,290,875	133,290,875		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6%인 24,112,359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1%인 16,133,252천원이 수납되고, 지방교부세는 36.0%인 188,704,661천원, 조정 교부금 등은 3.6%인 18,798,054원, 보조금 등은 27.2%인 142,646,317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436,414,250	511,522,341	369,344,239	70,624,814	71,553,288
결산확인액	436,414,250	511,522,341	369,344,239	70,624,814	71,553,288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436,414,250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5,469,278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19,638,81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11,522,341천원이었고, 세출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3%인 143,743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세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 해소기준에 맞추기 위한 경우 등으로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이체는 예산액의 11.9%인 52,214,428천원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예산을 해당부서로 조정한 것이다.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2%에 해당하는 369,344,239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0,624,81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36,336,384천원 계속비 이월 9,533,18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755,243천원이었으며
- ▶ 그 주요내용은 군도 확포장과 도로유지 관리사업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노인회관 건립, 급경사비 정비,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의 공기부족 또는 공기미도래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에 해당되는 71,553,288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다.

○ 집행잔액 과다발생

- ▶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사업별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100%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 일부 사업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총 예산액의 72.2%인 369,344,23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71,553,28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총 세입결산액 대비 15.2%인 79,729,836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 예비비사용

- ▶ 예비비는 수송대 관광지 익사사고자 손해배상금과 수해피해 복구지원 사업비 등에 686,6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83,640천원을 지출하고 2,96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는데 지출사유나 집행 절차는 적정하였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69,344,239	369,344,239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지출액	2016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383,476,529	511,522,341	369,344,239	72.2	△14,132,290	△3.7
일반공공행정	23,006,720	33,885,477	30,264,111	89.3	7,257,391	31.5
공공질서 및 안전	3,488,049	6,457,875	4,366,314	67.6	878,265	25.2
교 육	3,638,936	7,034,838	6,366,259	90.5	2,727,323	74.9
문화및관광	18,218,838	15,370,673	11,922,424	77.6	△6,296,414	△34.6
환경보호	34,436,247	42,058,652	35,928,903	85.4	1,492,656	4.3
사회복지	83,976,477	92,255,943	81,127,257	87.9	△2,849,220	△3.4
보 건	10,209,588	7,308,062	6,375,484	87.2	△3,834,104	△37.6
농림해양수산	84,557,924	109,798,220	81,818,318	74.5	△2,739,606	△3.2
산업·중소기업	10,664,040	8,571,038	7,629,068	89.0	△3,034,972	△78.5
수송및교통	18,989,813	28,223,681	18,106,833	64.2	△882,980	△4.6
국토및지역개발	41,703,688	66,543,784	33,653,149	50.6	△8,050,539	△19.4
예비비		36,909,685				
기 타	50,586,209	57,104,413	51,786,119	90.2	1,199,910	2.4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81,818,318천원, 사회복지 81,127,257천원, 일반 공공행정 30,264,111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일반 공공행정 7,257,391천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기능으로 전년대비 3.7%가 감소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5,597,503	67,237,022	66,373,684	13,232	850,106
공기업특별회계	32,061,695	33,768,604	33,518,439		250,165
상수도	11,928,565	13,483,440	13,308,182		175,258
하수도	20,133,130	20,285,164	20,210,257		74,907
기타특별회계	33,535,808	33,468,418	32,855,245	13,232	599,941
의료보호기금	779,528	779,204	779,20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07,000	509,856	509,856		
주차장관리	610,240	1,237,250	625,791	13,232	598,227
산업단지조성사업	7,012,330	6,340,094	6,340,094		
수질개선	5,207,077	5,180,813	5,180,813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05,946	707,514	707,514		
기반시설	55,770	55,770	55,770		
농업발전기금	18,657,917	18,657,917	18,656,203		1,714
결산확인액	65,597,503	67,237,022	66,373,684	13,232	850,106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66,373,684천원은 예산현액의 101.2%로서 776,181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에 기인한 것이다.

○ 불납결손처분은 13,232천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고,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 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6,373,684	66,373,684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0,194,942	65,597,503	31,027,202	6,225,846 (199,168)	28,344,455
공기업특별회계	29,098,300	32,061,695	19,011,835	4,884,881	8,164,979
상 수 도	10,247,549	11,928,565	5,831,377	1,904,139	4,193,049
하 수 도	18,850,751	20,133,130	13,180,458	2,980,742	3,971,930
기타특별회계	31,096,642	33,535,808	12,015,367	1,340,965 (199,168)	20,179,476
의료보호기금	779,528	779,528	778,278		1,2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07,000	507,000	144,332	362,668 (199,168)	
주차장관리	610,240	610,240	227,216		383,024
산업단지조성사업	4,791,710	7,012,330	1,863,071	948,680	4,200,579
수질개선	4,988,531	5,207,077	5,096,343		110,734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05,946	705,946	695,487	10,459	
기반시설	55,770	55,770	55,770		
농업발전기금	18,657,917	18,657,917	3,154,870	19,158	15,483,889
결산확인액	60,194,942	65,597,503	31,027,202	6,225,846 (199,168)	28,344,455
차 액	0	0	0	0	0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60,194,942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5,402,561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65,597,503천원이었고 지출액은 31,027,202천원이며 불용액이 43.2%인 28,344,455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적립금이 15,483,889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 ▶ 조직개편에 따라 28건에 5,068,260천원을 이체하였으며, 이월액은 5,757,846천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이중등록으로 인해 사업비 10,459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1,027,202	31,027,202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9,545,067 (776,778)		38,221,345 (199,168)		29,084,248 (114,964)	
일반회계		9,533,187 (776,778)		36,336,384		24,755,243 (114,964)	
일반공공행정				460,000		632,564	
공공질서및 안전				1,452,074			
문화및관광				773,000		1,112,666	
환경보호		967,814		2,397,739		2,045,969	
복지사회				2,351,996		3,825,379	
보건				550,174			
농림해양수산		8,565,373 (776,778)		3,335,826		7,941,583 (114,964)	
산업·중소기업				49,230		88,201	
수송및교통				7,243,074		902,897	
국토및지역개발				17,722,671		8,205,984	
기타특별회계		11,880		373,127 (199,168)		955,95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62,668 (199,168)			
산업단지조성사업		11,880				936,8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459			
농업발전기금						19,158	
공기업특별회계				1,511,834		3,373,047	
상수도사업				520,000		1,384,138	
하수도사업				991,834		1,988,909	

○ 검사결과 계속비는 9건 9,545,067천원으로 결산되어 있고, 사고이월비는 29,084,248천원이며, 명시이월비는 38,221,345천원임이 확인되었다.

3.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985,454,374	1,907,059,090	78,395,284	4.11%
I. 유 동 자 산	216,229,061	183,585,339	32,643,722	17.78%
II. 투 자 자 산	4,476,826	4,653,413	(176,587)	(3.79%)
III. 일 반 유 형 자 산	69,712,648	61,152,346	8,560,302	14.00%
IV. 주 민 편 의 시 설	274,685,641	268,417,433	6,268,208	2.34%
V. 사 회 기 반 시 설	1,419,834,278	1,388,302,198	31,532,080	2.27%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15,920	948,361	(432,441)	(45.60%)
부 채	40,329,093	36,660,793	3,668,300	10.01%
I. 유 동 부 채	12,295,079	7,371,011	4,924,068	66.80%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0.00%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8,034,014	29,289,782	(1,255,768)	(4.29%)
순 자 산	1,945,125,281	1,870,398,297	74,726,984	4.00%
I. 고 정 순 자 산	1,564,553,326	1,536,178,449	28,374,877	1.85%
II. 특 정 순 자 산	13,901,701	13,755,423	146,278	1.06%
III. 일 반 순 자 산	366,670,254	320,464,425	46,205,829	14.42%

- 2016회계연도말 거창군의 자산은 1,985,454,374천원으로 전년도 1,907,059,090천원보다 78,395,284천원(4.1%)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유동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유동자산 총액은 216,229,061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32,643,722천원(17.8%)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769,225,313천원으로 전년도 1,723,473,751천원 보다 45,751,56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회기반시설 31,532,080천원(68.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본 회계연도말 부채는 40,329,093천원으로 전년도 36,660,793천원보다 3,668,300천원(10.01%)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가 12,295,079천원(30.5%)이고 기타유동부채가 28,034,014천원(69.5%)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 유동부채 총액은 12,295,079천원으로 전년대비 4,924,068천원(66.8%)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의 총액은 28,034,014천원으로 전년대비 1,255,768천원(4.3%)이 감소하였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23,373,096	128,046,862	(4,673,766)	(3.65%)
가. 사업총원가	251,985,353	263,411,004	(11,425,651)	(4.34%)
나. 사업수익	128,612,257	135,364,142	(6,751,885)	(4.99%)
II. 관리운영비	55,857,779	53,932,442	1,925,337	3.57%
III. 비배분비용	16,125,294	12,500,231	3,625,063	29.00%
IV. 비배분수익	25,696,259	30,377,016	(4,680,757)	(15.41%)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69,659,910	164,102,519	5,557,391	3.39%
VI. 일반수익	256,164,312	242,718,011	13,446,301	5.54%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86,504,402)	(78,615,492)	(7,888,910)	10.03%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거창군의 사업 순원가는 123,373,096천원이고 관리운영비(55,857,779천원) 비배분비용(16,125,294천원) 및 비배분수익(25,696,259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9,659,910천원이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 169,659,910천원에서 일반수익 256,164,312천원을 차감한 2016년 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86,504,402천원이다.

○ 재정운영 결과 (-)86,504,402천원으로 전년도의 (-)78,615,492천원보다 (-)7,888,910천원(10%)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이 각각 1,925,337천원, 3,625,063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본 재무제표 확인결과

(단위 : 원)

구 분	과 목	회 계	현재액	변경금액	차 액
재무상태표	일반 순자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4,647,241,848	14,658,358,357	증11,116,509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	상수도 특별회계	335,849,265	324,732,756	△11,116,509

- 순자산은 자산 - 부채로 일반회계의 경우, 재무결산 시스템(이호조) 상 자산과 부채 입력 시 순자산은 자동으로 계산되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순자산까지도 수기로 입력하는 실정으로
- ▶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를 재무결산 시스템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오기로 인한 금액차이 발생

4. 성과보고서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제2항,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규정)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의 제4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나. 성과보고서 개념 및 작성

- 성과보고서는 전년도(Y-1)에 수립한 해당연도(Y)의 목표치를 다음연도(Y+1)에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은 분석·보고하여 환류 하도록 하는 구조
 - ▶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 ▶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되 임의변경 금지
 - ▶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130%이상)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등 시사점 도출

다. 감사결과 분석

- 거창군에서는 본 회계연도의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목표의 성과 타당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69개, 단위사업 210개로 구성된 성과지표 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달성률 (A/B)
계	20	69	210	175	34	83.3
의회사무과	1	1	2	2	0	
기획감사실	1	1	8	7	1	
민원봉사실	1	3	13	13	0	
행 정 과	1	2	12	12	0	
기업지원과	1	4	7	3	4	
재 무 과	1	2	9	9	0	
복지정책과	1	8	26	22	4	
안전총괄과	1	3	12	12	0	
경제교통과	1	6	13	12	1	
문화관광과	1	7	15	13	2	
산 립 과	1	2	11	8	3	
환 경 과	1	5	13	11	2	
건 설 과	1	5	13	11	2	
도시건축과	1	4	9	8	1	
농업기술센터	1	6	20	10	10	
보 건 소	1	1	9	7	2	
평생교육센터	1	5	8	6	2	
수도사업소	1	2	4	3	1	
체육시설사업소	1	1	4	4	0	
거창사건사업소	1	1	2	2	0	

- 검사범위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거창군의회에 제출된 성과 계획서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실적치의 정확성과 타당성 등 신뢰성을 검사하였음

- 거창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7개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13개 부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음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여 임의변경이나 누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책사업 67개, 정책지표 208개로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는 정책목표 69개, 정책지표 210개로 7개 부서에서 정책사업 목표와 지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130%이상)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4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25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 특히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목표치 하향 설정(17개 성과지표)하거나, 목표치를 성과달성에 유리하도록 설정(41개 성과지표)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 없이도 손쉽게 목표치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사례들이 확인됨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706,720	234,001	56,747	4,883,974
일 반 회 계	4,355,827	133,000	-	4,488,827
특 별 회 계	5,250	-	-	5,25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5,250	-	-	5,250
기 금	345,643	101,001	56,747	389,897
사회복지기금	345,643	101,001	56,747	389,897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83,974천원으로 전년도 말 잔액 4,706,720천원에서 당해연도 234,001천원이 발생하고, 56,747천원이 소멸 되었으며, 이는 보증금 채권인 회원권과 융자금채권의 증가로 인해 177,254천원이 증가하였다.
- 또한 당해 연도말 채권 4,883,974천원은 보증금 채권 133,000천원과 융자금 채권 4,750,974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3) 기 금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 월	수 입					지 출	당해연도말 현재액
		출연금	보조금	용자 회수금	예탁금 상 환	이자, 기타		
합 계	13,235,728	237,220	263,000	58,860		393,594	802,697	13,385,705
사회복지기금	3,919,016			58,860		176,327	127,800	4,026,403
식품진흥기금	49,654		3,000			15,908	3,000	65,562
재난관리기금	823,996	237,220	260,000			14,977	452,054	884,139
중소기업육성 기금	6,647,709					126,830	189,793	6,584,745
아름예술제진흥 기금	500,270					8,048	8,000	500,318
옥외광고정비 기금	208,229					29,040	2,050	235,219
체육진흥기금	1,086,854					22,464	20,000	1,089,319

- 당해 연도 말 현재 거창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으로써, 당해 연도 조성액은 952,674천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802,69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9,977천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385,705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4)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18,256,048	22,893,108	10,284,447	730,864,709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591,199,577	18,086,531	9,587,735	599,698,373
	공용재산	100,337,395	1,071,907	429,027	100,980,275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3,299,112	-	-	3,299,112
	소 계	694,836,084	19,158,438	10,016,762	703,977,760
일반재산	23,419,964	3,734,670	267,685	26,886,949	

-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730,865백만원으로 토지가 45,211천㎡로 237,476백만원이며, 건물은 173천㎡ 131,070백만원, 기타 1,850,292건, 362,31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608,661천원이 증가하였다.
- 주요 증가내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9,863,013천원, 소공원 조성 등 산림사업 684,583천원, 구)서흥여객 잔여부지 매입 670,000천원 등이며 감소내역은 산업단지부지매각처리 7,664,265천원, 소규모 공유재산매각 108,119천원 등이다.

(5)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854	28	16	866
금 액	6,013,594	608,849	357,051	6,265,392

- 검사결과 현재 물품은 6,265,39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 608,849천원, 매각·폐기 등 357,051천원으로 물품은 전년도 보다 251,798천원이 증가한 6,265,392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세출 결산분야》

1.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

(현황)

□ 최근 2년간 이월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기타
2015년도	3,373,865	917,374	1,784,046	597,889	74,556
2016년도	4,025,417	1,029,863	2,145,448	598,227	251,879
증가율	19.3 %	12.3%	20.3%	0.06%	237%

□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세목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액	1,029,863	65,919	554,036	182,392	227,516
비율	100%	6.4%	53.8%	17.7%	22.1%

□ 2016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과 목 별					
		재산임대 및 사용료	차량등록 및 검사지연	손배법 위반	그 외 수입	이행 강제금	기 타
세 액	2,145,448	5,048	94,342	911,428	465,278	89,327	580,025
비율(%)	100	0.2	4.4	42.5	21.7	4.2	27

※ 자동차 관련 체납 : 46.9%

(문제점)

- 최근 2년간 이월체납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19.3%가 증가되었고, 그 중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경우 20.3%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53.8%를 차지하고, 또한 2016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중 차량등록 및 검사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배법위반 등 자동차 관련 체납이 46.9%를 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월체납액이 증가하는 데는 징수 전담조직 부재와 잦은 인사동 그리고 적극적인 징수의지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하겠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조치, 소멸시효 경과분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 체납세 징수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말 현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 중 69.1%에 해당하는 168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남의 경우에도 19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이미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 중인 바, 우리군에도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음

2. 거창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가로환경 개선

(현황)

□ 최근 2년간 거창읍 차량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자가용	영업용	관용	비고
2016년 3월말현재	18,887	18,194	471	222	
2017년 2월말현재	19,542	18,851	463	228	
증감	증 655	증 657	감 8	증 6	

□ 2017년 2월말 거창읍 주차장 현황

(단위 : 면)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11,121	2,024	1,110	7,987

※ 거창읍 주차장 확보율 : 56.9%

- 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고수부지 노외주차장 확보 및 이면도로 주차선 긋기 와 주차허용 훌쩍제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통합 터미널 주변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함
- 또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40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 12월 6일 준공되어, 현재 무료개방 운영 중인 135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경우에도 2017년 3월 현재 평균 이용률이 54% 정도로 저조한 실정임
- 읍 시가지 변두리 일부지역 보도블럭의 노후화 및 파손과 오토바이, 자전거 수리점 주변 적치물 등으로 인한 환경이 대단히 불량한 실정임

(문제점)

-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없이 지도 단속만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 특히 통합터미널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터미널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형편이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경우에도 아직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인도 주변 적치물이나 보도블럭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체 시가지 가로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결산검사 시에 주차난 해소 문제는 수차례 개선 권고하였음에도 계도 단속 활동은 활발히 추진하였다 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상림리 주택가에 설치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과 같이, 주택밀집지역에는 요소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고, 통합 터미널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터미널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경우에도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물차 시가지 불법주차 강력단속, 공영차고지 이용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률을 점차 높여 나가야겠음
- 아울러 읍 시가지 보도블럭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오토바이 센터나 자전거 및 농기계 수리점 등 시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가지 가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겠음

3. 대형 계속사업 추진 지연

(현 황)

□ 대형 계속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기간	추진 상황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	○ 규모:410,000m ² ○ 사업비:11,700백만원	2014 ~2019	○ 환경청 협의중 ○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및 실시설계 중
거창 항노화 자연 휴양림 조성	○ 규모:479,276m ² ○ 사업비:5,000백만원	2016 ~2020	○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 실시설계 완료 ○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 보완중
거창법조 타운 이전	○ 규모 -구치소:160,818m ² -지원.지청:49,843m ² ○ 사업비:36,460백만원 (대체부지 이전)	2016 ~2019	○ 대체부지 선정 후 법무부와 협의중
아카데미 파크 조성	○ 규모 -가로경관 L=2.4km -공동체 마당 등 ○ 사업비:12,700백만원	2014 ~2019	○ 실시설계 보완 중
대동리 회전 교차로 조성	○ 규모 R=40m A=5,000m ² ○ 사업비:18,000백만원	2011 ~2017	○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계획 변경 ○ 실시설계 변경 시행중
거창관문 (만남의광장) 조성	○ 규모 광장 A=15,000m ² ○ 사업비: 5,000백만원	2014 ~2017	○ 실시설계 완료 ○ 도로공사 변경허가 신청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행 중

(문제점)

-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장기 계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초 계획 단계에서 부터 소요 사업비 확보대책, 예상되는 민원, 사업추진 과정상 법적인 절차이행 문제,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등 치밀한 검토를 거친 후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 최근 시행중인 대형 계속사업들 중 스피트익스트림 타운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6건의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집단민원 발생, 인근 주민과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사업기간에 비추어 볼때 대체로 추진상황이 부진한 실정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과다

(현 황)

□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금 액	56,439	19,712	8,759	9,441	9,046	9,481	

○ 연 평균 112억원의 상·하수도요금 적자보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과다

(문제점)

- 2015년 말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 80%, 경남평균 76.3%이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 40.4%, 경남평균 28.5%이나,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7.7%이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2%로 현저히 낮은 편임
- 정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일정수준(70%)까지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예산 편성 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점차 현실화시켜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는 물론, 군비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 분야 》

1.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현 황)

-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 성과계획서의 대상사업은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거창군의회에 제출한 모든 정책사업으로 임의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전략목표는 부서별 1개 정도로, 정책사업은 해당 연도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 성과보고서는 전년도(Y-1)에 수립한 해당연도(Y)의 목표치를 다음연도(Y+1)에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은 분석·보고하여 환류토록 하고 있음

(문제점)

- 전략목표는 거창군의 비전과 목표, 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 ▶ 거창군의 12개 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를 사후 성과보고서 작성시 임의로 변경하여 목표체계의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 간 연계성 미흡으로 당초 의도했던 전략목표 달성이 어려움

- 특히 거창군의 창조산업과와 문화센터 폐지, 기업지원과, 평생교육센터 신설 등 조직이 개편되고, 성과계획서 거창군의회 보고 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불가능 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지표와 예산을 수반한 부서의 업무계획 중 가장 핵심사업인 현안·전략과제와 신규·특수시책,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성과계획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 ‘거창군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는 성과계획서 제출이후 사업변동 내역 반영 등 수정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조직개편으로 정책사업 개수와 지표수가 변경되고, 본 예산 확정 후 각종 현안사업들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에서는 성과계획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성과보고서에 누락되는 사례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군에서는 본예산편성 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변경부문에 대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환류 할 수 있도록 ‘거창군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하기 바람

2. 군정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작성 재검토

(현 황)

- 거창군에서는 군정 목표달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목표는 담당별 전략과제 1개 정도를 설정하고 주요 추진과제 지표 2개 정도를 선정하여 추진
-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주요업무 목표대비 달성도 등 다면적 평가실시

(문 제 점)

- 거창군에서는 매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서를 작성
- 특히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본예산 편성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수립 시 환류하는 재정운용 제도로서
- 부서 전략목표 설정, 담당의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지표 작성 등 자체업무 평가와 유사하며, 평가항목 설정,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방법도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성과 계획서와 이중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서도 동일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에 의한 성과보고서는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과 목표 달성 과정,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어
- 이러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자체업무 평가를 실시한다면 부서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군정업무 평가자료 작성에 대한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분야 》

1. 민간위탁 건물의 효율성 제고

(현 황)

- 관련 근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등
 - 위탁건물 : 18개소 (건물 연 면적 : 135,203m²)
 - 2016 예산지원 : 3,851백만원
- 거창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0,245백만원으로 그 중 건물 위탁에 대한 비용은 9.6% 차지하며, 민간위탁 건물 외 구 보건소 건물 등 민간인 단체에 사용허가 된 건물 운영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실정
- 특히 2016년 거창군에 소요된 인건비는 48,088백만원으로 거창군의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실정

(문제점)

- 매년 공공용 건물에 대한 위탁비용은 증가추세에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은 건축비의 10% 가량이 소요된다고 분석되고 있어 군 재정의 과중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과 노인복지회관은 건축 연면적 2,155m², 6,644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중 군비는 5,044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공공건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군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제공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으나, 건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거창군의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거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관리 실태와 목적에 합당한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새로운 건물신축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수범사례 》

□ 지방재정 건전화 컨설팅 공모사업 실시

- 기 간 : 2016년 3월 24일 ~ 9월 5일
- 시행주체 : 경상남도 재정점검단 (전국 최초 시행)
- 대 상 : 거창군 재정운영 전반
- 방 법 : 재정운영 관계자와의 협의·면담 및 분석을 통해 그동안 재정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 조치

○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 기금 존속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폐합 가능 기금은 통·폐합 검토
- 민간보조금과 축제·행사성 경비 집행률이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높음
- 민간 보조금 예산 지원의 일몰제 도입 적극 검토
- 사회복지 분야예산의 증가폭이 높아 재정여건의 악화 우려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및 선심. 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등

○ 조치결과

- 컨설팅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제외 및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성 예산 총액 한도제 운영 등
-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016년도 대비 지방보조금 16억원, 행사·축제성 경비 28억원 등 총 44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사업에 투입한 것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좋은 수범사례가 되었다고 하겠음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일반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1) 전년도 권고사항

-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자금으로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추경시마다 재검토하여 적정 예산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삭감 처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조치결과 및 검토

- 과다하게 편성된 예비비는 재정형편에 따라 추경 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나 장기 계속사업들이 주로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나,
- 이후에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겠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1) 전년도 권고사항

- 당초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사업의 변경이나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 시급한 타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등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

(2) 조치결과 및 검토

- 사업 성격상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하겠으며,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나 도 조정 교부금, 도 재정건의 사업비 등을 추정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거나 축소되는 등 미집행 된 예산은 삭감하여 타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월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산정에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고, 과다 편성된 사업비는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사업 추진 등 건전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3. 체납금 징수대책 강화

(1) 전년도 권고사항

-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금 특별 징수기간 운영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맨투맨 담당자 지정 납부 독려
-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 강화로 신규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실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2) 조치결과 및 검토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운영하여 체납세 2,929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 채권확보를 위해 4,536건에 2,447백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여 압류재산 공매 등 과감하게 체납정리를 하고 있음
- 아울러 차량탐제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하고 있다하나, 납기내 납부 홍보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체납된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4. 농업 관련 보조금 관리 강화

(1) 전년도 권고사항

- 보조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지원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정보를 통합하고 공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 조치결과 및 검토

- 2016년도 1월 12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2012년도 분부터 계속해서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 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중지원 대상자 색출 등 보조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 바람

5. (구) 서흥여객부지 개발계획수립

(1) 전년도 권고사항

- 강남의 요충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인 만큼 타 자치단체사례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연구용역 실시 등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2) 조치결과 및 검토

- 2016년 5월에 부지개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1월 관광호텔 유치 등 부지개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현재 부지개발에 대한 사전감사 컨설팅 의뢰중이며,
- 향후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인 바, 본 개발사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람

6.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1) 전년도 권고사항

-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중 용수개발, 농로포장 사업, 용·배수로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은 단기간 내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2) 조치결과 및 검토

-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60%에 해당하는 8,893백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81개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238개 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사업비가 107,200백만원인데, 2017년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0,863백만원으로 계획대비 19.5%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 완료년도인 2018년도 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 잔여기간 동안 가능한 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구별 주민 숙원도 및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소규모 주민 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7. 상수도 누수방지 노후관로 교체사업 부진

(1) 전년도 권고사항

- 상수도 공급 유수율 80%이상 달성을 위해 향후 교체대상 관로 96.1Km 교체사업비 총 14,415백만원을 투자함에 있어, 목표연도인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50억원 정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

- 2015년도에 누수탐사, 불용관 제거, 불량계량기 교체 등 119 건의 누수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가조면 지구에 462개소에 원격 누수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옥내·외 누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국비예산 10,000백만원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국비예산 확보 및 그에 따른 군비 확보 등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8. 귀농 1번지 육성사업 추진

(1) 전년도 권고사항

- 2015년말 현재 귀농·귀촌인구는 2,018세대 4,330명에 달하고 있으나, 귀농인들과 토착민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 지역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귀농 상담시 다양한 검증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귀농인과토착민의 융화를 위한 상생프로그램 개발 및 귀농인 재능기부 등 활용대책 강구

(2) 조치결과 및 검토

- 거창군 귀농인연합회를 육성하여 농인들의 상호화합을 유도하고, 귀농인 상담요원을 채용하여 귀농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어려운 점에 대한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 지역민과 융화를 위해 월1회 고령자들이 많은 마을을 방문하여 이·미용, 염색, 집수리, 마을청소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읍면에 1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귀농·귀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9. 거창 IC 직거래 장터 운영

(1) 전년도 권고사항

- 직거래 장터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및 이벤트 정례화, 특판 행사 확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개최, 각종 체험활동 등으로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 강구

(2) 조치결과 및 검토

-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에 참여농가 간담회 4회, 홍보 전단지 배포, 계절별 특판 이벤트 행사 개최 3회 실시, 가족단위 체험 및 게임 등을 통해 방문객을 유도함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장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대형 기획사를 통한 특판 이벤트는 가급적 지양하고, 장터농가 주도로 월별 주제가 있는 농산물 특별행사를 진행하여 신선한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10. 거창읍 관내 소방도로 주차문제 해소

(1) 전년도 권고사항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차허용 흘.짜제 실시 등 계도 단속활동 강화와 주차 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2) 조치결과 및 검토

- 거창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도 단속활동 강화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자동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17년 3월 현재 거창읍 주차장 확보율이 56.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V. 금고의 결산

2016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 : 원)

구 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 액	비 고
합 계	590,059,202,895	400,371,441,804	189,687,761,091	
일반회계	523,685,518,515	369,344,239,211	154,341,279,304	
공기업특별회계	33,518,439,592	19,011,835,693	14,506,603,899	
상수도사업	13,308,182,344	5,831,377,013	7,476,805,331	
하수도사업	20,210,257,248	13,180,458,680	7,029,798,568	
기타 특별회계	32,855,244,788	12,015,366,900	20,839,877,888	
의료보호기금	779,203,660	778,278,010	925,65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09,856,180	144,332,160	365,524,020	
주차장관리	625,791,080	227,215,610	398,575,470	
산업단지조성사업	6,340,093,921	1,863,070,610	4,477,023,311	
수질개선	5,180,813,350	5,096,342,920	84,470,4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07,513,530	695,487,260	12,026,270	
기반시설	55,770,000	55,770,000	0	
농업발전기금	18,656,203,067	3,154,870,330	15,501,332,737	

- 2017년 1월 20일 현재 각 회계별 금고 보관 금액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잔액과 일치하였음
- 금고의 지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경쟁의 방법에 의거 3년 단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별로 구분하여 2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